2025년 세화종합사회복지관
시설안전·보건 관리 종합계획서

기독교대한감리회사회복지재단
세화종합사회복지관

2025년 시설안전◦보건 관리 종합계획서

1부. 시설안전◦보건 관리계획

Ⅰ. 시설개요 / 2p
Ⅱ. 시설안전점검 및 교육계획 / 3p
Ⅲ. 소방계획 / 4p
Ⅳ. 피난계획 / 9p
Ⅵ 감염병 대응계획 / 15p
Ⅶ 동하절기 재난대응계획 / 18p

2부. 중대재해 예방계획(법적의무이행)

Ⅰ. 중대재해예방 기본계획 / 19p
Ⅱ. 위험성요인 조사계획 / 21p
Ⅲ.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계획 / 22p
Ⅳ. 종사자 의견청취 조사 및 이행계획 / 23p
Ⅵ 중대재해 발생 대응메뉴얼 / 24p
Ⅶ 위탁(입찰,수의계약)시 안전·보건 적격평가계획 / 25p

1부. 시설안전 · 보건 관리계획

Ⅰ 시설개요

1. 시설개요

구 분	건축물 일반현황
명 칭	세화종합사회복지관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315(연수3동, 주공1단지아파트)
규모/구조	□ 건축면적 897.6㎡ □ 연면적 2896.46㎡
	□ 복지관 위탁면적 1427.6㎡
	□ 층수 지상 3 층 /지하 1층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지 붕 경사
	□ 용도 종합사회복지관
승 강 기	□ 승용 1대

2. 시설현황

총계	2,896.46㎡	세부내용
지하	948.01	기계실, 전기실, 보일러실
1층	698.25	조리실 , 어린이집, 노인정, 관리소, 푸드뱅크, 문서고
2층	845.00	사무실, 강당, 도서관, 자원봉사자실, 교육실, 피아노실 건강관리실, 다목적실, 상담실
3층	405.20	휴게실, 세미나실, 바둑실 등

※지하, 1층 노인정, 관리소, 어린이집은 복지관 면적 미포함

II 안전점검 및 교육계획

1. 안전점검계획

구분	시기 및 횟수	진행내용	점검자(기관)
시설 일일점검	주5일/일1회	일일점검표에 의한점검 후 이상발견시 개보수 실시	시설관리자
상하반기 정기점검	연2회	상하반기 정기점검 후 시설정보시스템 입력보고	시설관리자
승강기 전기점검	월1회	위탁업체 정기점검	현대엘리베이터
승강기 안전점검	연1회 (12월 신청)	승강기안전 법정점검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전기점검	연1회 (11월경)	의무 전기안전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
소방점검	6월-정밀 12월 작동	6월-정밀점검(관리소) 12월-작동점검(복지관)	복지관(전문업체) /관리소
가스안전점검	연1회 4월경 신청	법정 점검	가스안전공사
불법카메라 안전점검	월1회	불법카메라설치 안전점검 후 매월 구청보고	시설관리자

2. 안전교육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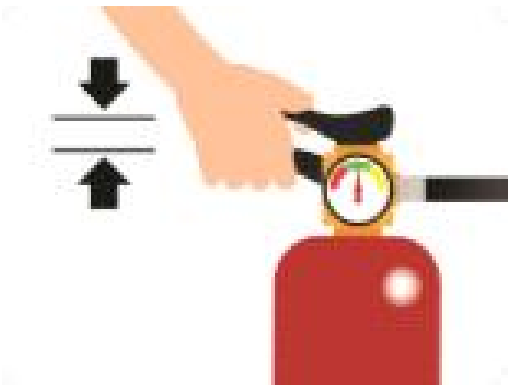
교육구분	시기 및 횟수	진행내용	교육자(기관)
모의훈련	연2회 (4월, 11월)	모의훈련 시나리오 작성 후 시나리오대로 훈련실시	시설관리자
예방교육 (대처교육)	연1회(11월)	화재, 지진 등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처_교육)	내부 또는 외부기관
보건교육	연2회 (6월, 9월)	감염예방 및 위생관리교육	내부 또는 외부기관

II 소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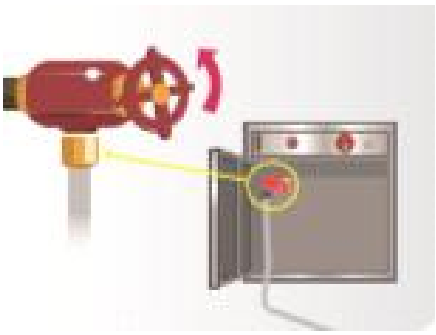
1. 소화시설 위치

층수	비치장소	소화기종류(소화기명)
1층	조리실	분사식 자동확산 소화기3.0Kg
	뱅크 창고	수동식소화기 분말(ABC) 3.3Kg
	조리실	수동식소화기 분말(ABC) 3.3Kg
	주민사무실	수동식소화기 분말(ABC) 3.3Kg
2층	로비	수동식소화기 분말(ABC) 3.3Kg
	강당 좌측	수동식소화기 분말(ABC) 3.3Kg
	강당방송실	수동식소화기 분말(ABC) 3.3Kg
	강당출입구	수동식소화기 분말(ABC) 3.3Kg
	강당피아노옆	수동식소화기 분말(ABC) 3.3Kg
	건강관리실	수동식소화기 분말(ABC) 3.3Kg
	관장실	수동식소화기 분말(ABC) 3.3Kg
	도서관	수동식소화기 분말(ABC) 3.3Kg
	로비강당입구	수동식소화기 분말(ABC) 3.3Kg
	로비사무실입구	수동식소화기 분말(ABC) 3.3Kg
	사무실 문서고	수동식소화기 분말(ABC) 3.3Kg
	사무실 탕비	수동식소화기 분말(ABC) 3.3Kg
	사무실현관	수동식소화기 분말(ABC) 3.3Kg
	기부식품팀실	수동식소화기 분말(ABC) 3.3Kg
	자원봉사실	수동식소화기 분말(ABC) 3.3Kg
	태권도실	수동식소화기 분말(ABC) 3.3Kg
	프로그램실	수동식소화기 분말(ABC) 3.3Kg
	프로그램실입구	수동식소화기 분말(ABC) 3.3Kg
	피아노실	수동식소화기 분말(ABC) 3.3Kg
	로비	투척용소화기
3층	급식실	분사식 자동확산 소화기3.0Kg
	가족상담실	수동식소화기 분말(ABC) 3.3Kg
	개별상담실	수동식소화기 분말(ABC) 3.3Kg
	교사실	수동식소화기 분말(ABC) 3.3Kg
	급식실	수동식소화기 분말(ABC) 3.3Kg
	로비	수동식소화기 분말(ABC) 3.3Kg
	방과후현관	수동식소화기 분말(ABC) 3.3Kg
	사례관리실입구	수동식소화기 분말(ABC) 3.3Kg
	심리검사실	수동식소화기 분말(ABC) 3.3Kg
	자람반	수동식소화기 분말(ABC) 3.3Kg
	직원휴게실	수동식소화기 분말(ABC) 3.3Kg
	창고	수동식소화기 분말(ABC) 3.3Kg
	희망반	수동식소화기 분말(ABC) 3.3Kg
	로비	투척용 소화기

2. 소화기 사용법

1. 실내에서 사용할 때는 밖으로 대피할 때를 대비하여 문을 등지고 소화기를 가져와서 몸통을 단단히 잡고 안전핀을 뽑는다.	
2. 노즐을 잡고 불쪽을 향해 가까이 이동한다.	
3. 손잡이를 꽉 움켜쥔다.	
4. 분말이 골고루 불을 덮을 수 있도록 쏜다.	

3. 소화전 사용법

1. 2인 1조로 사용을 하며 2명 중 1명이 먼저 소화전함의 문을 열고 호스와 노즐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2. 호스를 밖으로 꼬이지 않도록 불이 난 곳까지 길게 늘어뜨린 후 노즐(관창)을 잡고 방수자세를 취한다.	
3. 다른 한사람이 밸브를 돌려 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 후 뛰어가서 호스를 잡는 것을 도와준다. 4. 노즐의 끝을 돌려 물의 양을 조절해가며 불을 끈다.	

4. 초기대응 실패 후 행동하여야 할 요령

1) 초기진화에 실패하였을 때는 인명피해의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2) 대피로가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진압 활동을 즉시 포기하도록 한다.

5. 화재를 알리는 방법

1) 비상연락체계 구축

- 비상 연락 1시간 이내 복지관에 집결
- 유관기관 비상 연락을 수시 가동할 수 있는 연락체계 수립

구 분	대응방법 및 절차
화재경보	**화재경보방식(■일제경보, □우선경보)에 따라 화재경보** ■ 일제경보방식 : 전층[1 ~ 3층] 화재경보 □ 우선경보방식 : 발화층+직상층(___층)+지하층 화재경보
상황전파	**화재상황 전파 시 다음 방법에 따라 상황전파** ■ 육성 ■ 경종 ■ 비상방송(자동/수동) ■ 시각경보기 ■ 자위소방대 비상소집(비상방송 및 비상연락망) ☎ 종합방재실(수신반) : _____ / 기타 : _____
화재신고	이재숙(통보연락반)

2) 내부 비상연락 체계

구 분	소 속	성 명	개별임무	비상연락체계
대 장 (지휘반)	관장	김*길	화재 및 재난시 응급조치에 대한 지휘 및 지시	
부대장 (지휘반)	운영지원팀	김*석	비상연락망 가동, 재난방송 청취 및 전파	
통보연락반	운영지원팀	백*원	관계기관 및 관계자에게 통보연락	
	운영지원팀	이*숙	119신고, 건물 내 화재발생 또는 재난발생 통보	
진압반	복지2과	장*해	소화기, 관내 소화전을 사용하여 화재진압	
	지역조직팀	김*한	소화기, 관내 소화전을 사용하여 화재진압	
	사례관리팀	양*훈	소화기, 관내 소화전을 사용하여 화재진압	
	푸드뱅크	박*호	소화기, 관내 소화전을 사용하여 화재진압	
구조구급반	사례관리팀	김*주	부상자 응급조치 / 부상자 미발견시 피난유도	
	서비스제공팀	이*안	부상자 응급조치 / 부상자 미발견시 피난유도	
	사례관리팀	최*늘	부상자 응급조치 / 부상자 미발견시 피난유도	
	지역조직팀	전*민	부상자 응급조치 / 부상자 미발견시 피난유도	
	서비스제공팀	민*희	부상자 응급조치 / 부상자 미발견시 피난유도	

대피유도반	복지1과	제*름	건물 내 이용자 대피유도 총지휘 방화문 폐쇄, 가스·위험물 등 제거	
	서비스제공팀	조*라	2층 이용자 대피유도	
	서비스제공팀	양*희	2층 이용자 대피유도	
	서비스제공팀	최*랑	3층 이용자 대피유도	
	서비스제공팀	김*연	3층 이용자 대피유도	

3) 외부 비상연락 체계

구 분	전화	비고
인천공단소방서	723-5544	
동춘소방파출소	813-2119	
연수구청 복지정책과	749-7632	
주공1단지관리사무소	811-0437	
연수경찰서(생활안전과)	453-0766	
연수3동사무소	817-0278	

4) 비상연락 방법

구분	대응조치	대응절차
화재 발생	1. 119신고 2. 경보전파	1. 화재 목격자(육성으로 전파"불이야!") 2. 119 신고(화재발생 위치, 상태)
초기 소화 및 대피 활동	1. 소화기 이용한 초기진화 시도 2. 대피활동 지시 및 전개 3. 자위소방대 비상소집	1. 소화기 활용 초동 진화 실시 2. 대피유도 활동 지시 및 전개 3. 자위소방대 중심으로 진화작업 실시
초동 진화 작업	1. 초동 진화작업 실시 2. 대피활동 3. 인명 구조활동	1. 소화기, 소화전으로 초동 진화작업 실시 2. 소방대 도착전까지 대피유도 활동 전개 3. 인명 구조활동 전개

Ⅲ 피난계획

1. 피난안내도

1) 피난 안내문 및 안내도 작성방법

가. 시설에 있는 이용자의 특성을 분류하여 해당자가 쉽게 방송을 듣거나 방향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나. 대피 방송을 위한 문구를 사전에 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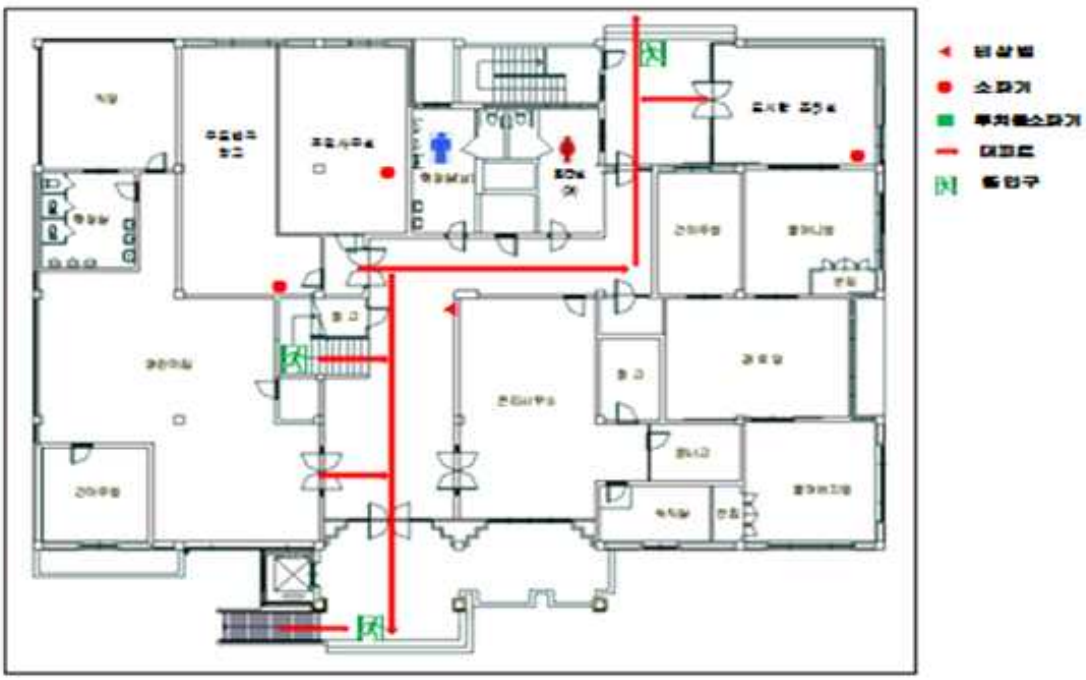
다. 시설의 층별 평면도를 그리고, 그 위에 피난방향을 표시한다.

라. 소화기, 옥내소화전, 경보장치, 발신기 등이 있는 위치를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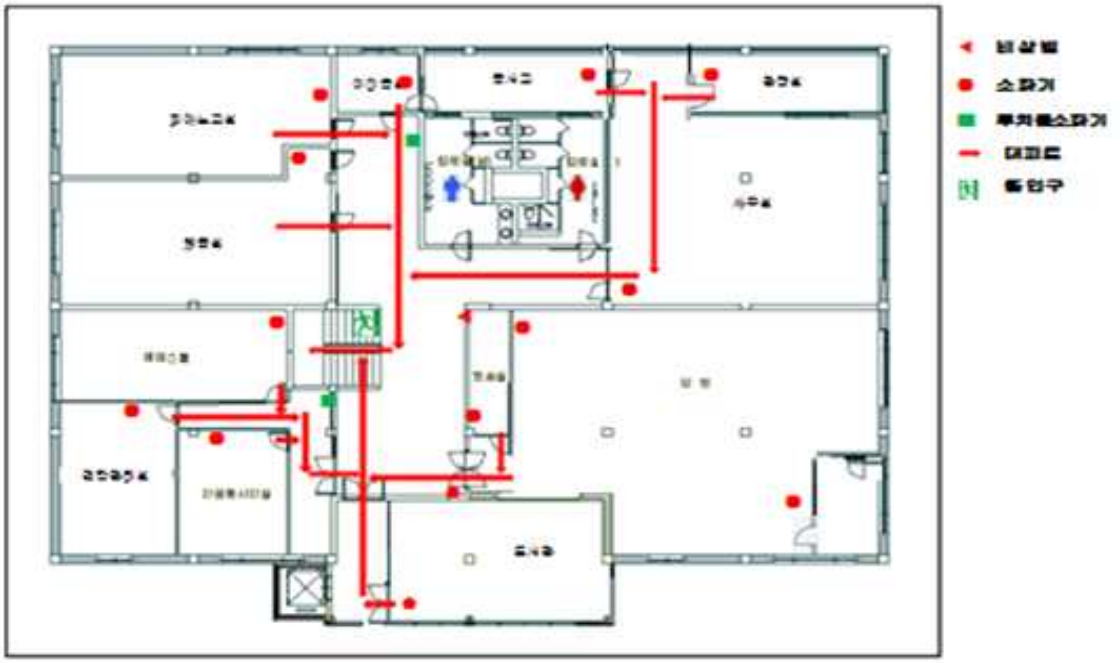
마. 막다른 통로나 복도의 위치를 표시하고, 유도등 위치를 표시한다.

라. 피난 안내도는 실 입구나 계단 근처에 부착하여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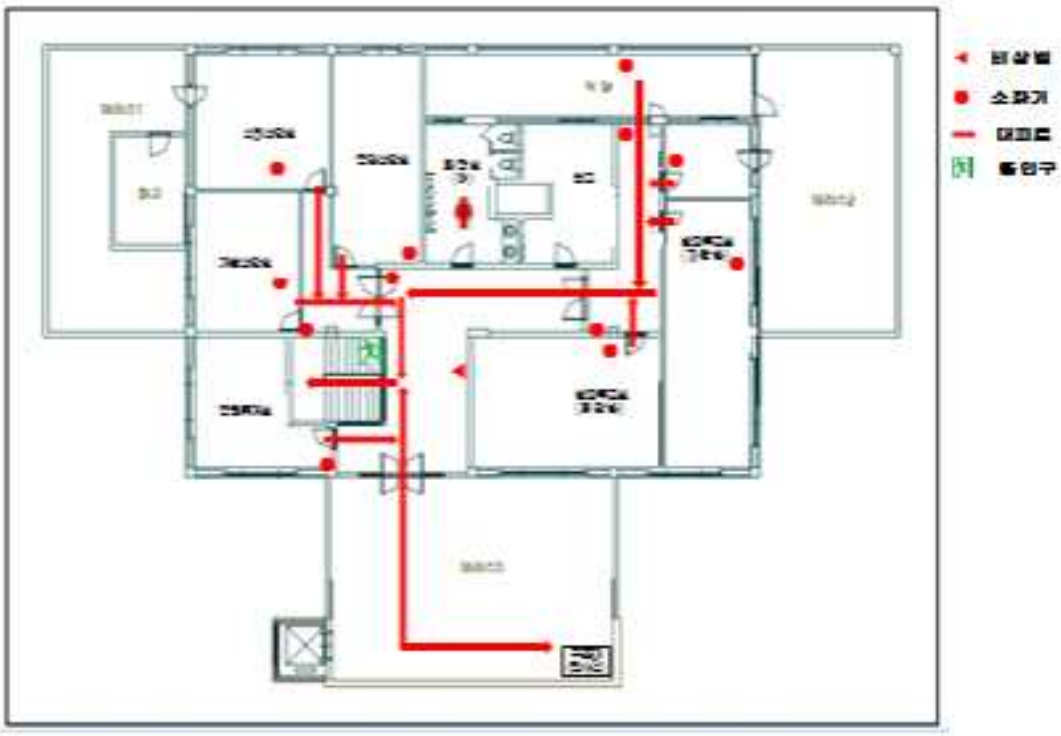
2) 피난안내도



지상 1층 비상대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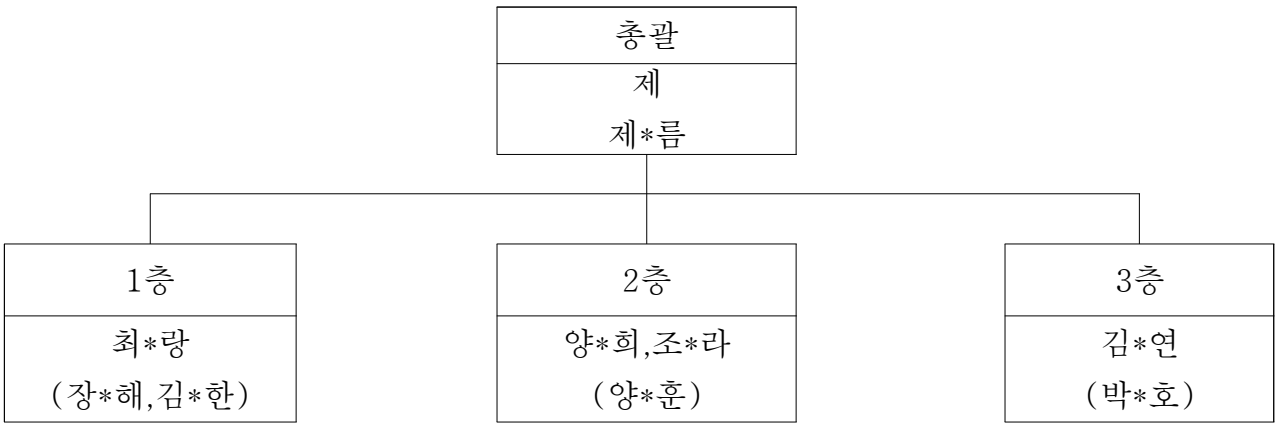
지상 2층 비상대피도



지상 3층 비상대피도

2. 피난유도 조직

1) 피난유도반 조직 및 역할



피난유도반 역할	· 방화문 폐쇄, 가스·위험물 등 제거 · 중요물품 안전한 장소로 이동 · 건물 내 이용자 대피유도

- 피난유도 조직은 화재예방 대피유도반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지진 및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반은 피난유도반으로 합류하여 활동한다.
- 지진 및 재난 발생 시 화재예방 진압반은 가스 및 위험물 제거, 낙하물 이동 등 이용자 피난 장애물 제거에 힘쓴다.
- 지진 및 재난 발생 시 화재예방 구조구급반은 응급환자 발생시 구조활동을 실시한다.

2) 피난 유도시 정확한 안내 멘트 숙지(방송 또는 육성)

"세화복지관 0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니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101동 앞 주차장으로 신속히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로 타시면 안됩니다."

"지진이 발생했으니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외부로 피신하시기 바랍니다. 복도 및 계단 가운데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로 타시면 안됩니다."

3. 대피유도반의 상황별 대응법

1) 초기 진화가 가능한 경우

- 화재지점의 이용자를 우선적 대피(화재 규모와 상관없이 실시)
- 화재지점에 이용자 접근 통제 및 피난로 확보/출입문 등 개방

2) 초기 진화에 실패한 경우

- 이용자를 안전구역으로 대피·유도, 비상구 확보 및 피난기구 설치 및 방화문 (방화셔터) 등 확보로 화재 차단 및 피난로 확보

3) 화재가 확산시

- 소방대장의 지시에 따라 대피활동 지원
- 이용자 및 외부인의 화재현장 접근 통제
- 출입구 및 비상구까지의 피난통로 확보
- 피난기구를 이용한 이용자의 대피활동

4) 화재의 소화시

- 이용자 및 외부인의 화재현장 접근 통제

5) 프로그램실의 대피하지 못한 이용자 색출

- 밀폐된 공간에 남아 있을 이용자를 가능한 빨리 수색한다.
- 대피 집합장소인 101동앞 주차장에서 대피가 확인되지 않은 이용자를 신속히 확인

4. 이용자별 행동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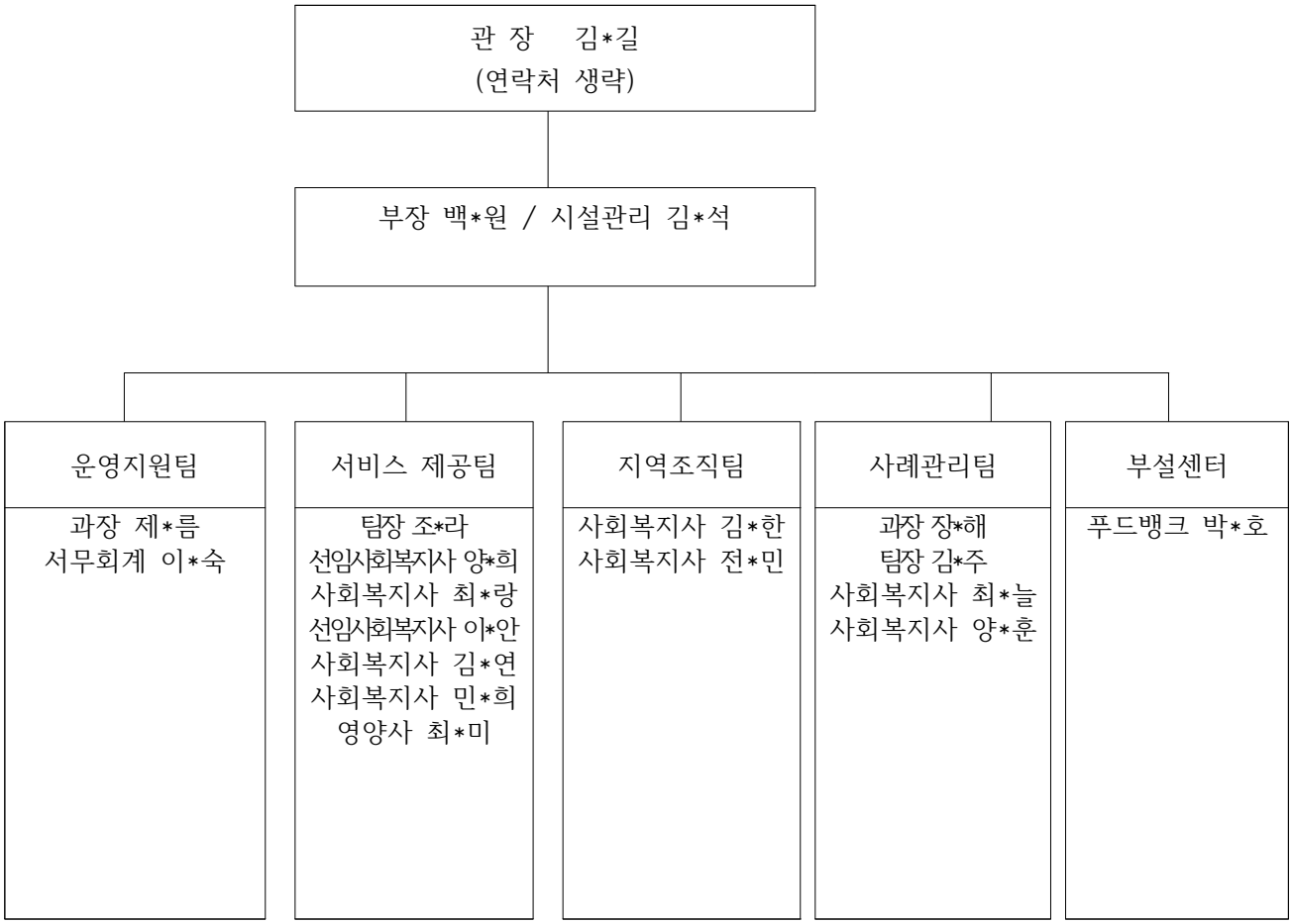
1) 이용자의 특성에 따른 행동절차(노인의 경우)

- 이용자 자력으로 피난이 가능한 경우 스스로 피난하도록 유도
- 화재실내의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안전구역 또는 복도 등으로 대피 (휠체어는 직접이동시킨다.)

2) 이용자의 특성에 따른 행동절차(아동의 경우)

- 혼자 피난이 가능한 아동의 경우는 안내자 지시에 따르도록 교육
- 피난통로 및 비상구 등의 출입로 확보 후 이용자의 대피 유도성이 높은 공간을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대장에게 알려 구조가 용이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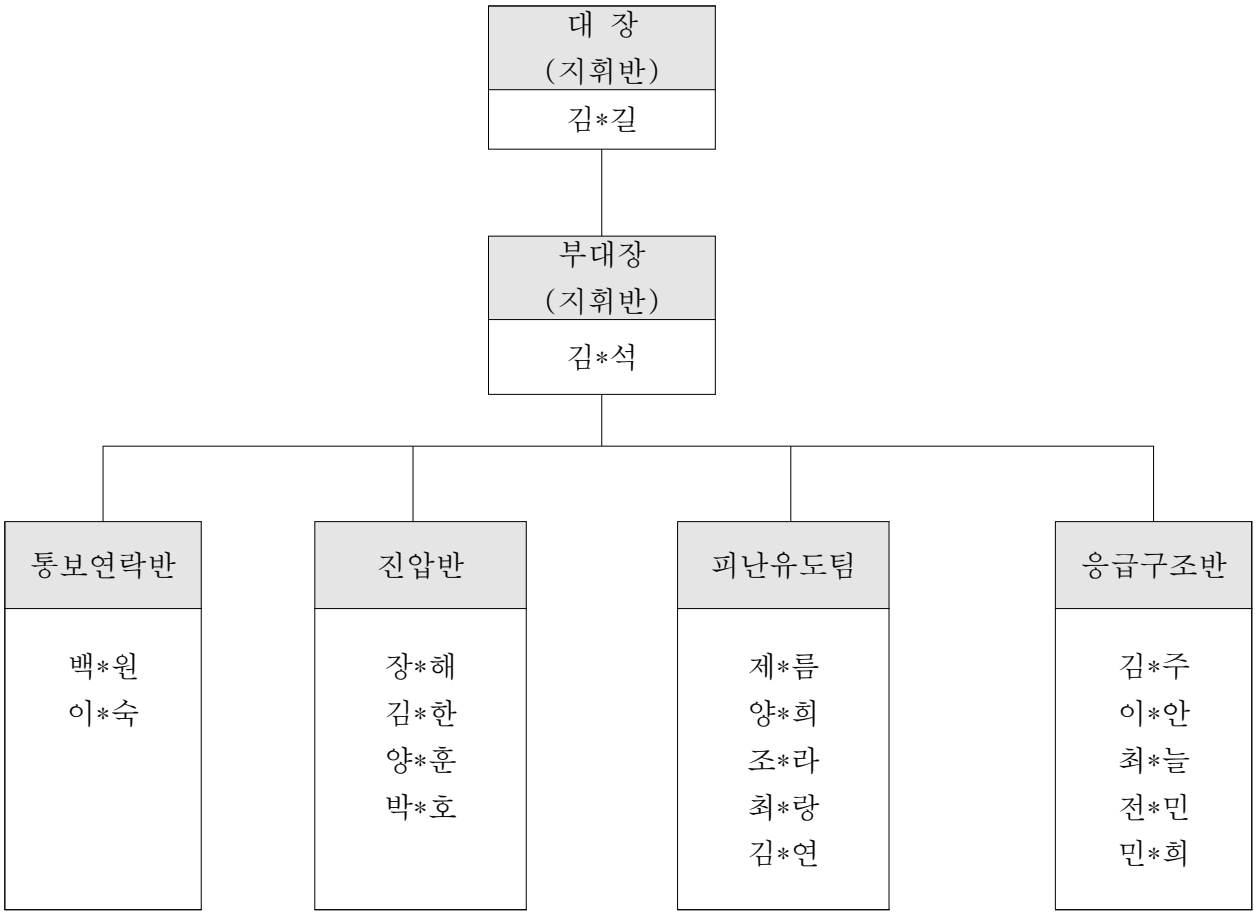
2025년 세화종합사회복지관 비상연락망



유관 기관 비상 연락 전화번호

연수경찰서	821-3331	주공1단지관리사무소	811-0437
연수파출소	813-0975	인천공단소방서	723-5519
연수구청 복지정책과	749-7632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	435-1525
연수3동사무소	817-0278	동춘소방파출소	813-2119
질병관리본부	1339	나사렛국제병원	899-9999
연수구보건소	749-8011	인천적십자병원	899-4000

2025년 소방 및 재난 응급조치반 편성도



반(팀) 별	임 무
지휘반	· 비상연락망 가동 · 재난방송 청취 및 전파 · 화재 및 재난시 응급조치에 대한 지휘 및 지시
통보연락반	· 119신고, 건물 내 화재발생 또는 재난발생 통보 · 관계기관 및 관계자에게 통보연락
진압반	· 소화기, 관내 소화전을 사용하여 화재진압 · 필요 장비를 동원하여 재난상황 극복
피난유도반	· 건물 내 이용자 대피유도 · 방화문 폐쇄, 가스·위험물 등 제거 · 중요물품 안전한 장소로 이동
응급구조반	· 부상자 응급조치 · 병원 긴급후송

Ⅵ 감염병 대응 계획

감염병 대응은 아래 대응계획을 기본으로 하되 정부 및 지자체 대응지침 수준에 따라 조정·변경하여 적용함.

1. 감염병 관리

1) 감염관리 책임자 : 제아름 과장
- 이용자.종사자 감염병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
- 시설 내 방역물품 비치 파악 등

2) 감염관리 담당자 : 김삼석 시설기사
- 시설 내 방역물품 비치 관리 및 재고 파악
- 일일 방문자 관리

2. 예방조치

1) 예방용품 비치, 상시 재고파악
- 비접촉 체온계 비치 관리
- 프로그램실별 손소독제 비치, 관리
- 화장실 손세척제, 휴지, 물티슈 충분히 비치
- 마스크 재고량 파악 및 관리, 마스크 미착용시 배분

2) 감염관리요령 교육 및 안내
- 관내 포스터 및 게시판, 홈페이지 안내
- 이용자 및 방문객 교육 및 안내
- 종사자 수시 교육 및 확인
- 코로나 19상황 주시 및 수시 전달
- 지역사회 확산정도에 따른 대응요령 전달

3) 모니터링
- 마스크, 손소독제 일일 재고량 파악
- 예방조치 및 일일재고량, 방역현황 일일 구청 보고
- 종사자 및 가족 중국 등 외국 및 국내 주요 발생 지역 방문여부 일일 확인
- 복지관 이용자 외국 및 국내 주요발생지역 방문 여부 확인 모니터링

4) 시설 방역 및 소독
- 1일 1회 이상 복지관 전체 방역 실시
- 알콜 소독제로 복지관 손잡이, 화장실, 사용 물품 등 수시 소독
- 일일 위생 점검표에 의한 청소 및 위생관리 철저

5) 의심증상 발생 시 대응요령
- 의심환자 발생시 보건소 조치 있기 전까지 격리공간 : 3층 개별상담실
- 해외 여행력이 없어도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보건소 신고
- 주요 발생 지역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구청 및 보건소 신고

3. 방문자 및 종사자 관리

1) 방문자 관리 계획
- 복지관 2층 입구 열화상카메라 비치, 복지관 모든 방문자 발열 체크
- 방문자 명부 작성(1개월 보관)
- 발열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의무 후 입실 가능
- 사회적 거리두기 (종사자와 이용자 악수 등 접촉 제, 집단 행사 연기 또는 취소)
- 주요 발생 이력이 있는 지역 및 국가 방문자 출입 제한

2) 종사자 관리 계획
- 단계별 방역수칙 교육 진행
- 1일 2회(오전, 오후) 체온 측정
-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수시 손소독
- 외출 자제 권고

4. 휴관 시 취약계층 돌봄 지원 대책

1) 취약계층 도시락 배달 서비스
- 주5회 135명 도시락 배달 실시(노인 125명, 장애인 10명)
- 자활인력을 활용한 최소인력으로 도시락 조리
- 자활 및 사회복무요원, 종사자 도시락 배달
- 조리 및 배달 인력 발열체크, 마스크착용의무, 손소독 후 조리 및 배달 실시
-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대체식 전달(주1-2회 배달)

5. 비상연락망

1) 신고접수 담당자 : 제아름 과장
 - 코로나 19 확산 방지 총괄 담당
 - 시·구 전달사항 관리 및 즉시 조치
 - 일일 상황 보고 및 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구 보고

2) 예방관리 담당자 : 김삼석 시설관리
 - 복지관 방문객 관리 총괄 : 사회복무요원 2명 배치, 방문객 관리 철저
 - 주1회 복지관 전체 방역소독 : 연수3동 방역물품 대여
 - 예방물품 일일 재고량 파악 및 구청 일일 보고
 - 방문객 접촉 및 종사자 수시 접촉 물품 알콜 소독

3) 일반 종사자 : 전직원 해당
 - 이용자 유선으로 건강 확인 및 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

4) 비상연락망
 - 종사자 비상연락망 : 화재발생 비상연락망과 동일
 - 유관기관 연락처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질병관리본부	1399	나사렛국제병원	032-899-9999
연수구보건소	032-749-8011	인천적십자병원	0507-1404-4009
인천시 복지정책과	032-440-3463	연수구 복지정책과	032-749-7632

Ⅶ 동·하절기 재난대응 계획

1. 동절기(혹한기) 대비 조치

1) 수도 계량기 동파방지 조치 : 계량기 보온 조치, 수도 물 틀어놓기
2) 관내 창문 개폐 확인
3) 온열기 화재 예방 점검 : 퇴근시 전열 스위치 확인
4) 폭설대비 조치 : 복지관 출입구 제설작업(연수주공1단지 관리사무소 연계 협조)

2. 하절기 대비 조치

1) 유리창 파손 방지 : 창문 개폐 확인, 창틀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
2)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외부의 물건 들여놓기
3) 시설 구조물 고정상태 확인
4) 건물 내외 배수구 점검, 우수관 막는 쓰레기 등 청소
5) 감전 위험 있는 전기 안전점검 실시
6) 시설 내 누수 확인 및 대비

2025년 태풍대비 비상체계도

비상 대기팀	임무
제*름 (010-****-****) 김*석 (010-****-****)	24시간 비상대기 상황발생시 긴급대처 단톡방 공지
· 인명피해발생시 : 119 신고 및 즉시 구청보고 · 시설물긴급복구필요시 : 긴급복구팀 가동 · 시설물피해발생시 : 구청보고 · 최고관리자보고 (김*길 : 010-****-****)	

↓

긴급지원팀		유관기관 긴급연락
백*원 (010- 장*해 (010- 이*안 (010- 김*한 (010- 최*늘 (010-	시설물 긴급복구 인명피해발생시 대처 ※ 30분 이내 복지관도착	긴급구조 119 연수구청 749-7632 담당주사 010-7673-7533 남동소방서 819-1190 동춘소방서 813-2119 적십자병원 899-4000 연수경찰서 821-3331

2부. 중대재해 예방계획(1.27법적의무이행)

Ⅰ 중대재해예방 기본계획

1. 안전보건 목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안전교육과 안전점검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킴

2. 안전보건 경영방침

세화종합사회복지관은 종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전 직원의 철저한 책임 의식과 적극적 의무이행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 경영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선언한다.

1. 모든 종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안전에 대한 기본원칙과 규정을 실천하는 안전문화를 정착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
2.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여 안전보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안전보건 사고를 방지하여 종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추구한다.
3. 세화종합사회복지관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예측하여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며, 안전보건 사고·사건에 대한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4.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종사자와 이해관계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5. 안전보건목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이행상태를 점검하여 안전보건경영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6. 안전보건법규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법적 안전성을 확보한다.
7. 하도급 간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자원 지원 및 정보 공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8. 종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실제적인 유해·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안전사고 방지 대책 수립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의를 보장한다.
9. 본 방침을 모든 종사자와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여 투명한 안전보건경영을 실현하여 신뢰와 협력을 강화한다.

3. 안전보건 관리 조직 및 역할

직책	직위 및 성명	역할
경영책임자	법인이사장 이*	·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 · 책임과 권한 승인
안건보건관리책임자	관장 김*길	· 안전보건 경영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 안전보건관리 업무 총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평가기준 및 평가 · 근로자의 건강관리, 위험 및 건강장해 방지
관리감독자	부장 백*원	· 사업장 시설, 방호장치 점검, 교육지도 · 안전보건 교육/점검 시스템 계획 및 점검 · 중대재해 사고접수·원인조사·대책수립 · 위험요인 개선 지시 및 점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과장 제*름	·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업무 총괄 관리 · 중대재해관련 종사자 의견 청취 · 산재보고 응급처지, 원인조사, 재발방지 · 감염병 관리 및 예방대처계획 수립·이행 · 보건점검 및 시정조치 확인
시설안전관리자	시설관리 김*석	· 화재예방, 모의훈련 계획 및 실행 · 시설안전점검 및 시정조치 확인 · 이해관계자의 안전에 관한 현안사항처리 · 위험요인조사 및 평가표 작성

4. 재해예방 예산

예산세목	산출근거	금액
기타후생비	종사자 건강검진비 200,000*7명=1,400,000원	1,400,000
수용비	해충방역비 66,000*12월=792,000원 공기청정기 67,800*12월=813,600원 전기안전점검비 200,000원*1식=200,000원 보호장비구입(가스누출탐지기,마스크,장갑등) 200,000원	2,005,600
시설장비	- 위험시설개보수(방수,수리 등) 40,000,000원 - 승강기정기검사비 150,000원*1식=150,000원 - 소방종합정밀점검비 600,000원*1식=600,000원	40,750,000
합 계		**44,155,600**

II 위험요인 조사 계획

1. 조사시기 : 연 2회 (상하반기 각1회)
2. 조사내용 : 위험요인 파악 및 위험성 평가, 개선대책
3. 조 사 자 : 시설관리 김*석
4. 확 인 자 : 총괄책임자 제*름 과장
5. 조사방법 : 연2회 연수구 제출 서식 의거 작성 및 구제출, 기관 보관
6. 위험요인조사표 서식 :

【서식1】

유해·위험요인 파악(위험성평가)

○ 평가대상 : 사회복지지, 사무직, 관리직 ○ 평가부서 : 세화종합사회복지관

번호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 확인결과			개선대책	개선 완료일	담당자
		적정	보완	해당없음			
1	사무실 내 이동 시 장애물에 의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바닥을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가?						
2	전자기기, 세단기 등 전기 사무용품 등의 사용 시 누전에 의한 감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3	사무기구(세단기 등) 사용 시 손가락 끼임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경고 표시를 부착하였는가?						
4	사무실의 어두운 조명에 의한 눈의 피로도를 예방하기 위하여 충분한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5	책상 사이의 좁은 통로로 이동 중 책상과 충돌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책상 재배치로 통로 확보가 되어 있는가?						
6	장시간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하여 휴식시간에 이용하도록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7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갖추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가 숙지하고 있는가?						
8	문어발식 콘센트를 사용하거나 전열기구가 과열 등으로 위험하지 않은가?						
9	소방 안전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소방설비를 갖추어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시 대처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가?						
10	사무실 및 화장실 등의 쓰레기통 비움, 먼지 정소 등의 환경 관리가 청결하게 유지되어 근로자들의 건강에 유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						

[서식2]

총괄책임자	시설관리자	작업자	관리감독자

부서명	운영지원팀	위험성평가표										평가자 :		
단위작업	사무직											작성일 :		
세부작업	유해 위험요인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위험도	현재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개선일	완료일	담당자	비고
						평가등급				평가등급				

1 페이지

Ⅲ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평가계획

1. 평가시기 : 연 2회 (상하반기 각1회)
2. 평가내용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 대한 업무수행평가
3. 평 가 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김*길 관장
4. 평가방법 : 연2회 아래 서식 의거 작성 및 기관 보관
4. 평기기준 및 평가표 서식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업무 수행 평가표

ㅁ 기관명 : 점검일자 : 년 월 일

분 야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개선 요망사항	비 고
		양호	보통	불량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업무 수행여부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안전보건 교육 실시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위험성평가 실시					
	종사자의 위험, 건강장해 방지					

● 반기 1회 점검
● 이행되지 않았을 시 추가적인 조치 필요(인력 배치, 예산의 추가 편성·집행 등의 필요한 조치 시행)

Ⅳ 종사자 의견청취조사 및 이행계획

1. 조사시기 : 연 2회 (상하반기 각1회)
2. 조사내용 : 근로자 위험요인 파악 및 위험성 평가, 개선대책
3. 조 사 자 : 총괄책임자 제*름 과장
4. 조사대상 : 각 팀별 최소 1인 이상 의견 청취 (전직원대상 상시 건의함 운영)
5. 이행방법 : 연2회 아래 양식 의거 종사자 의견청취 ☞ 위험요인 발견 ☞ 개선대책 수립 및 보고 ☞ 개선 후 결과보고(내부결재)
6. 종사자 의견청취 조사 서식 :

종사자 청취조사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의견청취 목적	근로자의 실질적 위험요인 발굴과 개선
실시방법	근로자들에게 조사표 서식에 의한 의견 청취

작 성 자		소속 및 직위	
담당업무		작성일시	

유해 · 위험요인 발견 또는 경험 1

유해 · 위험요인 발견 또는 경험 2

개선대책 제안

사고의 유형

① 떨어짐
② 넘어짐
③ 끼임
④ 부딪힘
⑤ 맞음
⑥ 무너짐
⑦ 끼임
⑧ 절단, 베임, 찔림
⑨ 감전
⑩ 폭발, 파열
⑪ 화재
⑫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⑬ 이상온도, 물체접촉
⑭ 화학물질 누출·접촉
⑮ 기타

질병의 유형

① 감염
② 진폐
③ 중독
④ 난청
⑤ 요통
⑥ 기타

Ⅴ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 시나리오

산업재해

업무로 인한
3일 이상 휴업재해

중대재해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
동시 **10명** 이상

중대산업재해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
1년 이내 **3명** 이상

⇩

응급조치
(필요시 병원진료 이송)

응급조치
(필요시 119 호출 및 병원진료 이송)

- 재해자 긴급 후송 :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긴급 후송
- 기계정지 및 작업 중지, 남은 근로자 대피
- 사고원인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 보존
- 보고: 관리감독자 등 책임자에게 알림
- 고용노동부 보고 :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에서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
- 재해자 가족에게 연락

작업 중지 조치

- 목격자 의견 청취
- 사고원인 파악
- 근로자 트라우마 관리
- 동종 유사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 재해자 및 재해자 가족에 대한 보상

(필요시) 초기대응 및 대피

(유선 보고) 중대산업재해 전담조직 사업장별 주관 부서

(유선 보고) 중대산업재해 전담조직
사업장별 주관 부서
고용노동지청

현장 보존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및 제출
(중대산업재해 전담조직, 사업장별 주관 부서, 고용노동지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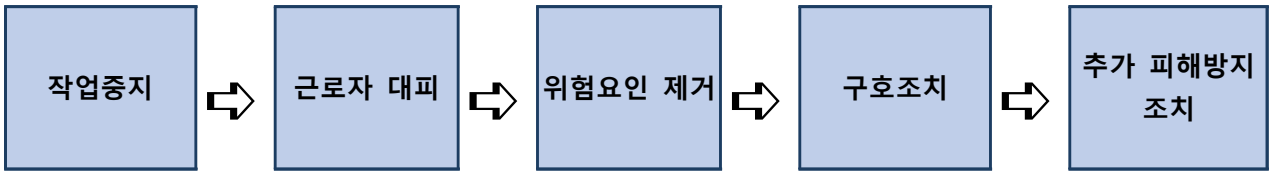
(산업재해) 1개월 이내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즉시**

♣ **작업중지 해제 :** 재해자 가족 관리, 근로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사고원인의 종합적 파악

사고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중대산업재해 전담조직, 사업장별 주관 부서)

(산업재해) 1개월 이내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즉시**

♣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방법 교육, 비상연락망 구축, 작업환경개선, 사고대응훈련



구 분	행동 및 조치절차	업무수행
중대 재해 발생	▶ 발생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한다. ▶ 최초 발견자는 휴대폰, 무전기, 유선 이용해서 발생장소 및 환자상태를 소속 관리감독자(부서장)에게 신속히 연락한다. (비상연락망 공유 및 숙지 후 신속 연락) ▶ 인명피해, 화재 등 경우 119 등에 즉시 신고한다.	최초 발견자
응급조치	▶ 지혈장비를 이용하여 부상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는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한다.	안전관리자
사고현장 처리	▶ 사고현장은 최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까지 그대로 보존한다. (사진, 동영상 촬영) ▶ 2차 재해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작업자 대피 등 위험원을 보호 조치하고,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부장)
이송	▶ 재해자는 즉시 이송한다. ▶ 구급차가 필요한 경우 119등에 요청하여 환자를 이송한다. - 소방서 출동 후에는 구급·구조에 대해 소방서의 지시를 따라 이행 ※ 건축물 붕괴 등으로 인해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호조치 이행 예외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부장)
사후관리	▶ 보고대상인 경우 관계기관 사고발생 보고 (시민안전과/재난안전상황실 등) ▶ 사고대책반, 재해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사고원인 및 보완사항 안전교육 ▶ 개인별 임무숙지, 응급처치의 적절성 보완 등 ▶ 사고 유형에 따른 매뉴얼, 지침, 상황판단회의 결과 등 절차에 따라 복구 실시 ※ 단, 원인규명이 안된 경우, 사고지점 일대는 소방서, 경찰서 등 원인조사를 위해 현장보존 ▶ **피해복구를 위한 인력, 예산 등 지원** ▶ 피해자 및 가족 의료지원(치료 및 장례 절차 지원 등)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부장)

Ⅵ 위탁(입찰,수의계약)시 안전 · 보건관리 적격평가 계획

1. 평가시기 : 위탁업체 선정(입찰, 수의계약 포함)
2. 평가대상 : 공사 등 복지관 내에서 작업 실시를 위탁받는 업체
2. 평가내용 :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적격평가
3. 평가 및 확인자 : 총괄책임자 제아름 과장, 관리감독자 백혜원 부장
4. 평가방법 : 아래 서식 의거 위탁업체 선정 시 평가항목 미제출 또는 부실업체 선정 제외
5. 평기기준 및 평가표 서식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NO	평가항목	적정성 확인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보건경영방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정성 여부			
2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3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 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5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6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7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재해율 및 사망재해)			

6. 도급·용역·위탁시 기관 자체평가 서식 :

도급 · 용역 · 위탁시 기관 자체점검 평가항목

NO	평가항목	확인결과		
		우수	미흡	해당 없음
1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관리비용 원가계산서에 반영하였는가?			
2	도급·용역·위탁 시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하지 않았는가?			
3	위험공법 사용을 금지하였는가?			
4	과업지시서 작성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명시하였는가?			
5	입찰 공고 시(수의계약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명시하였는가?			
6	입찰 공고 시(수의계약 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제시하고 평가하였는가?			
7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시 가산점 항목에 '안전보건 확보 정도'를 추가하였는가?			
8	계약 시 수급업체로부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징구하였는가?			

【 참고자료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적정성 평가 기준 】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기초

1. 안전보건관리체계

NO	평가항목	적정성 확인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보건경영방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정성 여부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하여 적정하게 수립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없는 경우 또는 내용이 부실하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2.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위험성평가)

NO	평가항목	적정성 확인		
		우수	보통	미흡
2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① 우수

- 도급·용역·위탁 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 수립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절차에 따라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 수립

② 보통

- 도급·용역·위탁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대책이 없음

3. 안전보호 장비

NO	평가항목	적정성 확인		
		우수	보통	미흡
3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 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① 우수

- 도급·용역·위탁 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추락, 끼임, 깔림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에 따른 보호구 종류 숙지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보호 장비 사용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전,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4. 안전보건교육 계획

NO	평가항목	적정성 확인		
		우수	보통	미흡
4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함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5.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 계획

NO	평가항목	적정성 확인		
		우수	보통	미흡
5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① 우수

-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 및 권한에 대한 업무 절차가 수립됨
-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

6. 비상조치 체계 구축 적정 여부

NO	평가항목	적정성 확인		
		우수	보통	미흡
6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노동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 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 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7. 산업재해 현황

*재해율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조회 가능

NO	평가항목	적정성 확인		
		우수	보통	미흡
7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재해율 및 사망재해)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